

#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 · 신고제도 안내

## 1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<sup>1)</sup> 지정 · 신고제도 및 대상

-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45조의3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<sup>2)</sup>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( ‘18.6.12.)
  - ※ 임원급은 통상적 명칭과 관계없이 다른 임원과 직무상 독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
-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대상의 기준을 기존의 종업원 수, 이용자 수 등에서 자산총액, 매출액 등으로 개정( ‘19.6.13.)
  - ※ 상세내용은 [과학기술정보통신부>정책·정보간행물>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·신고제도 안내서](#) 참조

## 2. 신고 의무 제외 대상

- 자본금 **1억원 이하**의 부가통신사업자
- 소기업<sup>3)</sup> 중 상시 근로자 수\*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**소상공인**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: **5명 미만**)
  - \* 상시 근로자 제외 인원은 “임원, 일용근로자,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”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

## 3. CISO의 자격 요건(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)

### [일반자격 요건]

-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<sup>4)</sup>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1) CISO(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란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**임원급의 최고책임자**를 지칭(CISO의 업무는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5조의3제4항 참고)

2) 전기통신(기간, 부가, 특수부가)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

3) 소기업 기준은 「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참고

4)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범위 및 관련 학과·경력 기준은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별표 1 참고

#### 4. **겸직 금지**(대상조건에 미해당 사업자는 CISO의 겸직 가능)

**[대상]**

-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
-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

**[특별자격요건]**

-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(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) 이상인 사람

\* 3번의 CISO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 상근하는 자로서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.

#### 5. **신고접수 문의처**

- 온라인(인터넷) :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**([www.emsit.go.kr](http://www.emsit.go.kr))  
\*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> 전자민원신청 > 민원신청 > 신청인 정보입력 > 완료
- 오프라인(우편 · FAX 등) : 지역별 전파관리소 [붙임1]

#### 6. **신고의무 제외대상 관련 문의처**

-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명자료
  - (법인)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직전년도 재무재표 각 1부.
  - (개인) 예금잔고증명서, 영업용자산명세서 각 1부.
- 소상공인 소명자료
  -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 1부.

※ 제출 및 문의

- 주 소 : (30121)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
- 이메일 : cybercq@korea.kr
- 담당자 : CISO제도 담당(044-202-6464)

#### 7. **주의사항**

-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, **90일 이내**에 **신고하지 않을 경우**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76조 제1항 제6의2에 따라 **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 부과

[붙임1]

##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접수 문의처

기 관 명	전화번호	FAX	주 소	관할지역*
중앙전파관리소	02-3400-2332	02-3400-2329	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	해외 등
서울전파관리소	02-2680-1749 02-2680-1753	02-2680-1758	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
부산전파관리소	051-974-5120	051-974-5129	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부산광역시 경상남도
광주전파관리소	061-330-6818	061-330-6829	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광주광역시 전라남도
강릉전파관리소	033-660-2815	033-660-2819	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강원도
대전전파관리소	042-520-4136	042-520-4190	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
대구전파관리소	053-749-2818	053-749-2929	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	대구광역시 경상북도
전주전파관리소	063-260-0102	063-260-0111	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전라북도
제주전파관리소	064-740-2812	064-740-282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제주특별자치도
청주전파관리소	043-261-5856	043-261-5839	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	충청북도
울산전파관리소	052-231-8883	052-257-0939	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울산광역시

\*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

[붙임2]

Q & A

질 의	답 변
○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 (실제 영리 행위는 없음)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	○ 정보통신망법은 구체적 영리행위 존재유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음 - 따라서, 영리 목적의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 홈페이지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경우,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	○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, 이용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기업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해외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	○ 법률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 필요 - 정보통신망법은 장소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적용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됨
○ 소상공인임을 소명하는 방법은	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
○ 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, 일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	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여부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, “영리 목적” 여부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상인 또는 회사가 블로그, SNS,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	○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
○ 모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회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,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	○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내부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,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○ 국외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,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, 국내 자회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	○ 국내 자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○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표시해야 하는지?	○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

질 의	답 변
<p>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 요건으로 상근자를 규정하지 않음</p> <p>- 이 경우 다른 기업 재직자나 해당 기업 비상근자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</p>	<p>○ 정보통신망법령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일반 자격요건으로 임원급의 지위와 학력·경력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</p> <p>- 따라서, 다른 기업의 재직자나 해당 기업의 비상근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일반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정 가능</p>
<p>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보보호 관련 학력·경력을 갖추도록 규정</p> <p>- 이 경우 학위 취득 시기와 경력의 선·후 관계</p>	<p>○ 정보보호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갖추면 되고, 선·후는 관계없음</p>
<p>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서식에 경력기간에 대한 기입란만 있는데, 학력이나 관련학과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지?</p>	<p>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충분하며, 신고 시 기입한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</p>
<p>○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정·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 허위일 경우 처벌 규정은?</p>	<p>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자격요건이 허위일 경우 시정명령(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)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,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(제76조제1항제12호)</p>
<p>○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</p> <p>- 이 경우 임원급의 구체적 범위</p>	<p>○ 정보통신망법에 임원급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</p> <p>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제40조제1항) 상 임원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</p> <p>*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, 감사 등과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</p> <p>○ 임원급은 통상적 명칭과 관계없이 다른 임원과 직무상 독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,</p> <p>-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책임지는 임원급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</p>
<p>○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방법</p>	<p>○ 상법 상 이사·감사 등 등기 임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소명 가능</p> <p>○ 비등기 임원의 경우, 직무·직위기술서, 조직도, 위임·전결규정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통해 소명 가능</p>
<p>○ 부장 직급자로 지정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볼 수 있는지</p>	<p>○ 다른 임원과의 대등성, 지휘 관계, 직급 체계,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임원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</p> <p>- “차장→부장→상무→전무→부사장→사장” 등의 진급 체계 내의 직위인 경우, 부장은 임원급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</p>

질 의	답 변
○ 부사장·전무이사 등 임원 하위에 임원의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가능 여부	○ 부사장·전무이사 등 임원 하위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임원의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가능
○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급이란?	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- 본부장·실장·처장 등이 임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
○ 1년 이상 근무한 사장·대표이사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	○ 사장·대표이사가 사장·대표이사로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소관 했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가능
○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SI업체 또는 보안업체가 기업집단의 개별 회사에 대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SI업체 또는 보안업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개별 회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	○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관계를 규율하지 않음 - 따라서, 개별 법인별로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어야 함 - 다만, SI업체 또는 보안업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소속회사에 임원급으로 소속되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음
○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산정 방법	○ 전년도 10월~12월의 순 방문자수(UV)*의 일일 평균 * (Unique View) IP 기준 1일 방문자 수(동일 IP로 동일일에 수회 방문시 1명으로 산정)
○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의 산정 방법	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한 온라인 판매, 광고, 콘텐츠 제공 등으로 인한 수익과 부가수익, 수수료 수입 등 관련 매출액의 총합
○ 인프라(서버, 네트워크) 운영·관리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?	○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운영·관리하는 서버·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
○ 프로그램 개발업무가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?	○ 자체 보안 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은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되나, 일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정보보호 업무에 미해당
○ 보안서비스 사업이 정보보호 업무에 포함되는지?	○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 서비스는 정보보호 업무에 해당되나, 다른 기업에 대한 보안서비스 사업은 정보보호 업무에 미해당
○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 분야의 경력에 해당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	○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 및 경력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 가능

